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50,824,184	202,524,726
일반회계	6,038,114,901	181,143,447
특별회계	712,709,283	21,381,278
기타특별회계	712,709,283	21,381,278
코리아인태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700,000	111,0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2,109,774	1,563,29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500,000	135,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9,992,147	12,299,76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867,207	146,016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721,000	21,630
소방특별회계	236,819,155	7,104,57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695,64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4,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